

<녹 취 전 문>

과제명	2022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사업		
구술자명	목영준		
면담자	김택호	면담장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
면담일시	2022. 10. 27. 14:00~	회차	1

<file 1> 목영준 1회차-1.mp4

1. 시작멘트(00:00:00~00:00:47)

면담자 :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2022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님의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과거 재판 경험과 헌법철학을 생생한 육성과 동영상에 담아 헌법재판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구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술 일시는 2022년 10월 27일 오후 두 시, 구술 장소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 플라티넘빌딩 8층에 위치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입니다. 면담자는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김택호입니다. 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 네, 안녕하세요?

면담자 :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술자 : 네, 영광입니다.

2. 근황(00:00:48~00:12:06)

면담자 : 이제 이런저런 중요한 내용들을 여쭙게 될 텐데요. 우선 근황을 좀 여쭙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지난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학기 정도 이제 생활하신 것 같은데요. 법조인 지망생들과 학교생활 또 학업 지도 방식과 원칙 등등 학교에서 느끼신 소회들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 사실은 작년 말에 고려대학교에서 석좌교수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좀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석좌교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맡았고요. 금년 1학기에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규 강의를 했어요, 학점 강의를. 그리고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3년 정도 교수를 했었는데 그때 하던 방식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문답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문답식 교육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고 그다음에 문답식 교육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2학기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똑같은 강의를 100명 이상 놓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특강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젊은, 소위 말하는 미래 법조인들과 대화하고 같이 호흡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 재판관님, 진행하셨던 강좌명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구술자 : 그게 법과 재판 실무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러한 자리고요. 특강은 약간 변형이 돼서 헌법재판 전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법조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부분을 1학년 입학생들한테 하는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졸업생들한테 우리 법조의 미래에 대해서 하는 특강이 있고,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강의 내용이 틀리고, 한 두 번에 걸쳐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들을 상대로 특강을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국제상사중재도 한 번 했고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조계의 변화 그다음에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강연을 했었죠.

면담자 : 젊은 학생들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구술자 :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하다가 IMF 시대에 우리 법조계가 변천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IMF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IMF 후에 태어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격차가 있어서 저도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기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밝고 충명하고 그렇죠.

면담자 : 지금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사회공헌위원회입니다. 이 활동에 상당히 열의를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재판관님께서요. 이 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이 위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게 된 계기라든가 배경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 네. 제가 2012년도 9월에 헌법재판소를 나왔죠. 그리고 쉬고 있다가 2013년 중반쯤 됐는데 김앤장사무소에서 “공익 활동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김앤장 자체가 공익 활동을 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수락을 하면서 기왕이면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무실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의욕적인 변호사 두 분을 상근 변호사로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위원회 위원들을 이 김앤장 구성원 중에서 공익에 관해서 일을 해보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유니세프 사무총장을 하셨다든지 등등 이런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변호사의 사회 공헌 활동, 즉 무슨 소송 대리를 해준다거나 법률 상담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런 데서 좀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글로벌 로펌들이 어떻게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지 공부를 했죠. 연구를 하고, 해본 결과 ‘아,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랑은 많이 틀리다.’ 이렇게 알게 돼서 저희가 글로벌, 쉽게 말하면 저희 법률가가 사회 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또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 공헌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을 했고요. 솔직히 제 예상이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김앤장 사회 공헌 활동이 유명해져서 사실은 2017년도에 후즈후 리걸(Who's Who Legal)이라는, 즉 “후즈후” 라는 게 인명사전인데 그중에 후즈후 리걸이라는 다른 별도 법인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세계 법조 시장을 평가하는 데 2017년도에 저희 김앤장이 사회 공헌 대상, 즉 ‘Best Pro Bono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을 해서 그게 제가 런던에 가서 진짜 턱시도를 입고 글로벌 로펌의 대표들이 막 수백 명이 모인 데서, 사회 공헌 대상만 연설할 권리가 있어요. 나머지는 상만 주고, 사회 공헌 대상은 스피치를 할 시간을 줘서 거기서 스피치도 하고, 아주아주 과분한 영광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매주 목요일 아침 오전에는 이 자리에 위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사회에서 일어난 일 또는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회 공헌 활동을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거는 하자, 안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액티브(Active) 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

사회공헌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 두 개가 있어서 공익법률센터는 주로 공익 법률적 활동,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법률을 가르쳐준다든지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공익단체들한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MOU를 맺고 하는 그러한 공익 법률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센터’ 즉 저희 김앤장의 구성원들로 1년에 100명에서 120명 정도를 명칭은 K&C 프렌즈라고 그래서 봉사단 활동을 만들어서 매 주말 사회봉사 활동을 합니다. 양로원도 가고 청소년보육센터도 가서 지원하는. 그렇게 두 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법률가가 사회 공헌을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게 좋으나 이런 약간은 롤 모델 같은 거를 만들었다는 게 의의가 있고요. 지금은 다른 로펌들도 예전 패턴의 공익 활동에서 지금 저희 같은 패턴으로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 특별히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노력을 기울이신 배경이나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요?

구술자 : 제일 큰 이유는 헌법재판관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판사 할 때도 공익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때는 어떤 단체에다가 정기적인 기부하는 자체로 그냥 끝났었죠. 그런데 제가 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헌법재판한 것 중에 다수의견이 된 것도 있고 소수의견이 된 것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 결정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관,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어야 된다는 그 세계관이 마침 여기 사회공헌위원회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죠. 지금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잘은 안 돼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3. 출생과 청소년기까지의 성장(00:12:07~00:19:40)

면담자 : 잘 알겠습니다. 재판관님 초기 생애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5년 서울에서 출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술자 : 여기, 청와대의 바로 옆이 창성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선친께서 안성이 고향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서 사업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이러느라고, 아주 일찍 서울로 올라오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안성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안성을 적어도 마음은 안 떠나시려고 소위 옛날로 말하면 호적이죠. 등록기준지를 안성으로 났었는데 사실은 제가 장남이 아니니까 결혼해서 분가할 때 서울로 옮기면 되는데 또 저희 선친께서 안 옮겼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에다 그냥 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등록기준지가 안성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성서 거주하거나 성장해 본 적은 없는. 그러나 안성에 선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몇 번씩 내려가고 그렇기는 하죠.

면담자 : 방금 선친 말씀도 잠깐 주셨는데요. 태어나셨을 당시에 가업이라든가 가족관계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술자 : 저희 선친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꽤 유명한 사업가 중의 한 분이고 정치도 좀 하셨고.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큰 형님이 맡으셨고 그사이에 지금 의사 하고 있는 누나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막내인데 아주 늦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아주 연세 많으실 때 낳았으니까 많이 예뻐하셨죠. 많이 예뻐하시고 경제적으로 꽤 상당히 유복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움 못 겪은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알겠느냐고 청문회 때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면답자 : 그러면 학교를 경기고에 입학하시기 전까지는 그 창성동 일대에 거주하시면서 학교를 다니시고 그러셨죠?

구술자 : 네. 여기 청운초등학교라고 바로 청와대 옆에 있는 데서 졸업을 했죠. 그 당시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하여튼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성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를 6학년 졸업해서 경기중학교에 넣기는 아깝다. 애를 5학년 마치면 경기중학교에 넣자.”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권유를 해서 제가 하여튼 5학년 때 검정고시를 쳐서 경기중학교를 쳤어요. 그때, 막 시험제도가 바뀌어서 시험을 너무 쉽게 내는 바람에 체능 점수, 그러니까 체력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기를 만점을 맞았는데 체능을 못해갔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다시 6학년을 갔어요. 6학년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그 체능 훈련만, 체력만 막 단련시켜갔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체능도 만점 맞아갔고 경기중학교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한 번 떨어진 거죠. (웃음)

면답자 : 먼 거리로 학교를 다니신 기억은 없으신 거네요?

구술자 :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역경을 뒤엎고 무슨 큰 결 이루고 이래야 감동인데 저는 그냥 부모님 그늘 아래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큰 고통이 없이 살아와서 제가 하여튼 감동이 없습니다, 삶에. (웃음)

면답자 : 경기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요. 그때 당시의 교우 관계랄까요? 또 이후에도 같은 법조계에서라든가 가깝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구술자 : 많죠. 많은데 저희 시대는 굉장히 학제가 빨리 개편이 되고 그랬어요. 제가 경기중학교를 들어가자마자 학제 개편이 있어갔고 중학교 무시험제도가 그다음부터 생기면서 경기, 서울, 경북, 이 세 학교는 중학교를 폐교시키고 나머지 중학교들은 추첨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중학교 1, 2, 3학년을 후배 없이 그냥 졸업을 하고 경기고등학교는 시험 안 치고 바로 올라왔어요. 그게 480명이고 그다음에 720명이 정원이나니까 240명은 정말 전국에서 치열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왔죠. 당연히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면 3년 편하게 산 480명과 정말 치열하게 공부한 24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공부를 잘할지는 뻔하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못하다가 겨우 고3 가서 따라잡았어요. 아주 되게 고생했습니다, 학제 개편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때 경기고등학교라는 게 전국 최고의 수재가 모이는 데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친구들한테. ‘아, 공부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워서 제가 발전하는 데 왜, 남 좋은 사람 옆에 서면 같이 발전하듯이 굉장히 저도 스스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학계, 정계, 관계, 의료계 대한민국에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지금 장관급 이상만 한 세 명 있고, 다 무슨 유명한 명의 그러면 다 저희 고등학교 동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고요. 다만, 저희가 65세가 다 은퇴니까 이제 정년 퇴임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기업의 회장, 사장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정말 대견하고 뿌듯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4. 서울대 법대 재학 시기(00:19:41~00:31:57)

면담자 : 78년도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셨습니다.¹⁾ 법학 전공을 선택하신 것은 자연스러우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 제가 대학 들어간 건 74년, 졸업한 게 78년인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저는 법대를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무슨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 법대 가면 가지.” 이래갖고 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다른 대학을 간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희 때 또 학제 개편이 있어서 서울대학을 법과대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계열이라는 걸로 들어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고민 안 하고 사회계열 갔고 2학년 때 과 나눌 때 고민 안 하고 법과대학을 가고 그랬죠. 저도 왜 제가 그렇게 법과대학을 가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면담자 : 그럼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법대를 간다는 이미지가 있으셨던데.

구술자 : 그런 건지 하여튼 그냥 당연히 ‘법대 간다.’ 이런 생각을 했지 다른 과를... 저는 어차피 이과는 적성이 안 맞으니까 무슨 이과 쪽 갈 생각은 안 했고 문과로는 적성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거기서 무슨 다른 과를 가겠다는 생각 자체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면담자 : 그러면 그 사회계열을 입학하셨을 때 전공선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입시 준비하는 것처럼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구술자 : 그러니까 그게 소위 행정의 문제점인데요. 이 학제 개편을 할 때 사회계열을 뽑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과를 나눌 건지를 나눠야,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데, 대학 자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에 사회계열을 들어갔는데 너네는 2학년 때 어떻게 나누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학점은 그래도 따야지.’ 이래갖고 학점을 열심히 땀는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도 대학교 가면 좀 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점을 안 땀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결국 2학년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나눠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학교가 “학점으로 나눕니다.” 이래갖고 저는 법과대학을 갔지만, 상당히 우수한 친구가 학점 관리를 잘못해서 법과대학을 못 가고 다른 과를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사법시험 공부를 해갖고 법조계로 들어는 오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학사 행정,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로, 학사 행정을 좀 예측 가능성 있게 미리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학제 개편이 막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대학 당국도 그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대학 가는 데 저는 다행히 학점 관리를 좀 해갖고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죠.

면담자 :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신 것인데요. 법대에서 교수님들은 상대적으로 아카데미(Academic) 한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해로 받아들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구술자 :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의 예를 봐서 그렇겠죠. 저는 경영학, 의학, 법학 독일이 그런데요. 미국도 지금 어느 정도 되지만. 이거는 실용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에서는 소위 빵을 주는 학문(Brot geben wissenschaft)으로 보거든요, 이 세 개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법학은 실용 학문이다. 실용 학문이라는 것은 변호사 자격을 따는 게 우선 중요하다, 법률가 자격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 다닐 때는 법률 이론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1) 구술자가 대학에 입학한 것은 1974년이다. 면담자의 착오이다.

안 썼습니다. 오히려 사법시험 되고 나서 뭘 바람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학문 연구를 하겠다고 온갖 일을 했지 사법시험 붙을 때까지는 사법시험만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학교수님들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인 걸 많이 따지셨는데 사실은 저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학 다닐 때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항상 휴교가 돼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들을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저는 하여튼 이게 실용 학문이라는 것 때문에 법대 들어가서 그냥 사법시험 공부부터 먼저 했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면답자 :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신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 될 때였는데 법대는 또 사법시험 준비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었을 것 같고요 유신시대의 법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때 당시의 생활을 좀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가 됐어요. 그래갖고 유신이 종료된 게 잘 아시겠지만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유신이 종료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의 삶은 다 유신시대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3월 2일 날 개강을 하면 당연히 데모를 하고, 데모를 하면 바로 휴교 또는 휴업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휴교는 학교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고 휴업은 수업을 폐지하는 건데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내려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강의 두 번 듣나, 세 번 듣나를 못 넘기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다행히 휴업 때는 학교 도서관이라도 쓸 수 있는데 휴교 때는 캠퍼스 자체를 못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법대 학생들이 절을 간다든지 무슨 고시촌을 간다든지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 생활이라는 거를 거의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학 4년 동안. 그래서 불행한 세대죠, 뭐.

면답자 : 재판관님께서 어떻게 따로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신다든가 그게 많지는 않으셨나요?

구술자 : 네. 저도 별 수 없으니까 절에도 좀 다녔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 같은 데 다니고 그렇게 해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고 다행히 휴업 중인 때, 그런 때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어디 정해진 데는 없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면답자 : 사법시험 준비하신 것 외에 또 다른 관심사나 이런 건 기억나십니까? 20대 초반에.

구술자 :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생 중에서, 아마 그 당시 대학생 중에서 사회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고요. 그때는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활동이라고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도 했죠.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학생들이 했는데 그중에 운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저희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분들은 형사처벌도 받고 학교도 퇴학을 당했고 이렇게 돼서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졸업을 했습니다.

면답자 : 재학 중에 합격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시에 준비를 하는데 어떤 그룹핑(Grouping)이 돼서 준비를 한다든가 특별한 어떤 문화가 좀 있었는지요?

구술자 :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용 학문이라 ‘얼른 자격을 따고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법시험 공부를.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법시험 과목도 모르는 거예요. 책도 물론 못 구하고. 그래서 저기 종로 5가에 무슨 고시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도대체 무슨 과목이 사법시험 과목인지도 모르고 뭐가 1차고 뭐가 2차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앉아갖고 그분들이 강의하는 걸 들은 거예요.

면답자 : 아, 그게 1학년 때 말씀이십니까?

구술자 : 1학년 말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릴 때. 대개 그런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사법시험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형들이 “너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아니, 제가 이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엽다고 과목도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요령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학교 가서 누구랑 같이 상의하기보다는 그 고시학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2학년 말에 1차 시험 그다음에 3학년 말에 2차 시험 이렇게 합격을 했죠. 그건 제가 남들보다 아주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또 제 성격이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데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빨리됐습니다. 빨리된 거죠.

면담자 :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2차 준비는 보통은 절에 들어가신다든가 이런 문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술자 : 다행히 그때 저희 3학년 때는 휴업만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휴업은 아닌데 상당 기간을 휴업을 해서 도서관은 열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오히려 학교 도서관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절에도 좀 있었지만 주로 학교 도서관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 도서관이 공부가 제일 잘된 것 같아요.

면담자 : 혹시 그때 공부하셨던 사찰이 어디였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구술자 : 네. 천보사라고요. 큰 절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친구 몇 분과 출연해서 만든 절이 있어요. 의정부에 있는 절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큰 절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 몇 분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절을 만드셨죠. 절을 설립을 하셨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웃음)

면담자 : 그러셨군요.

구술자 : 네네.

5. 사법시험 합격 이후의 일들(00:31:58~00:41:20)

면담자 : 합격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셨습니다. 10기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랄까요? 법학 교육체계가 법대에는 아카데미 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사법연수원은 실무역량 강화가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의 법학 교육하고 큰 차이 또 이후에 사법연수원에서의 경험이 재판관님께 어떤 영향을 주셨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구술자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공부를 거의 안 하고 합격을 해갖고 사실은 법률 이론 자체를 잘 모를 때 연수원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법시험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달라서 잘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과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에서 법률 이론은 다 끝내고 왔다는 전제하에서 실무를 가르치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민사재판 실무, 형사재판 실무, 검찰 실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제가 19회 합격했는데 19회는 본래 연수원 9기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졸업을 못 했으니까 졸업을 하고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을 다니다가 사법연수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0기로 들어갔는데 10기가 98명 합격했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거기서 간사라는 걸 했습니다. 심부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배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지냈고요. 교수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숫자가 적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연수원 성적에 크게 신경을 안 쓸 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교수님들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공부를 별로 안 했고 그다음에 2년 차가 되면 소위 법원에 실무 나가고, 검찰 실무 나가고 변호사 실무 나가고 그러는데 그때 하여튼 법원 실무, 검찰 실무, 변호사 실무 지도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분들한테 감사할 정도로 많이 배웠죠. 단순히 무슨 실무뿐이 아니고 그분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2년을, 연수원 1년간 실무를 배우고 2년 차에서 실무 수습을 한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학생에서 사회인이 되는 그러한 큰 전환점이 됐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면담자 :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더 생겼는데요. 사법시험 2차 합격하신 이후에 학교에서 4학년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 4학년 때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 놀았죠, 뭐. 기본적으로는 놀았는데 교수님들이 보기에 어떻든 노는 애가 하나 있으니까 ‘야를 좀 일을 시켜야겠다.’ 이래갖고 제 지도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너 내 방에서 조교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조교는 아니고, 그래서 교수님이 책 쓰시는 거 교정 보고 교수님 시험 감독 들어갈 때 저도 대신 들어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는 조교를 하면서 지냈는데 더 부지런을 떨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놀았어요. 놀면서도 그래도 그때 몇 개 건진 것들은 영어학원하고 일어 학원을 매일 다녔죠. 그래서 아침에는 먼저 학원부터 두 개 영어하고 일어 학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또 거기서도 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그다음에 교수님 책도 교정도 보고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놀았죠. 놀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원 들어가서 있다가 한 학기 대학원 마치고 사법연수원 들어갔습니다.

면담자 : 대학원 입학 계기에 대해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원을 왜 그 시기에 진학을 하셨던 것인지.

구술자 : 그러니까 제가 좀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학문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관심이 없다가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 학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용 학문이니까 먼저 변호사 자격을 땀으니까 이제는 학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대학원을 간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 욕구가 그때 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일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는 제가 또 형사법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형사법으로 해갖고 당시에 유명한 서울법대 교수님 중에 강구진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판사 하시다가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서울대학 오신 분인데 이분 밑에서 형사법을 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그분 밑에서 석사학위까지 형사법으로 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석사학위 따고 박사과정을 들어가려는 순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러면서 저도 박사과정을 멈칫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도 무슨 뚜렷한 의지로 바꾼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상법, 국제거래법 이쪽으로 전공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면담자 : 법관직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구술자 : 그것도 역시 일관성이 없는 일이지는 한데요. 제가 아까도 형사법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검사를 지망을 했고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요새 유행하는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이 형사법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소위 화이트 칼라 크라임(White Collar Crime). 그러니까 소위 ‘고급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검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좀 흔들렸어요. 군법무관 3년을 가서. 만약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 지원을 하라고 그랬으면 고민 안 하고 검사로 갔을 텐데요.

면담자 : 아, 그 이후였군요, 선택이.

구술자 : 네.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법무관 3년을 가면서 그 3년 동안에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전공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형사법보다는 이게 국제거래법이나 이게 상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워낙 어학을 좋아해요. 어학을 좋아해서 국제거래법에 갑자기 약간 쓸렸죠. 그렇게 전공을 바꾸다 보니까 3년을 마치니까 선택지가 ‘판사를 갈까, 검사를 갈까?’ 아니면 그때 막 김앤장이나 이런 몇 개의 로펌이 막 스카웃을 할 때예요. ‘여기를 갈까?’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정말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법관이 제일 안전하겠다. 무슨 ‘꼭 법원을 가서 나라의 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건 아닌데요. ‘법관이 내 적성에 그래도 제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검사도 안 가고 우리 김앤장이나 지금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 리앤고라는 사무실에, 그 두 개도 안 가고 판사를 지망하게 된 거죠. 제 삶이 그래요. 이렇게 확고한 의지로 이렇게 설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약간은 그때그때마다 좀 틀린, 이게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사가 된 겁니다.

6. 군법무관 시기(00:41:21~00:47:51)

면담자 : 군법무관 시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디서 근무하셨는지.

구술자 : 그러니까 군법무관을 저희 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사범연수원 수료해서 군 미필자들은 16주, 그 뒤에 영천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광주보병학교라는 데서 16주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방 부대로...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조치원이라는 후방 부대를 받았는데 거기는 소위 상설 병력은 숫자가 적고 주로 방위병들이 많습니다, 후방 부대니까. 방위병의 군복무라는 거는 출퇴근이거든요, 애가 출근 안 하면 군무이탈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여튼 법무관 재판하면서 군무이탈죄 재판이 대부분이에요. 출근 안 한 죄죠, 뭐. 그다음에 요새 유명해진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러니까 여호와증인 신도분들께서 병역거부 하는.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훈련소 자체를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면 그분들은 일반 민간 재판을 받는 거고 훈련소를 들어와서 징역 거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군법회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재판하는데 어느 쪽이나, 군무이탈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이나 다 유죄는 되는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 양형을 가볍게 해주나 그게 그 당시에 검찰관 법무참모의 제 역할이었죠. 그런데 윗분들은 자꾸만 “그러면 안 된다. 애네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군무이탈도 안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안 한다.” 이러지만 또 법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면 그 사람들의 형량을 줄여주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법무관이 제일 많이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중간에 국방부 검찰관으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데니까 다 선호하는 보직이었는데 하여튼 운 좋게 거기로 왔는데 거기가 좀 한가한 자리예요. 그래서 ‘아, 이제 편하게 지내겠구나.’ 이랬는데 제가 갔더니 큰 사건이 두 개가 터졌어요. 하나는 그 당시는 ‘중공 민항기 납치 사건’ 이고 지금은 중공이 없으니까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 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소위 하이재킹을, 중국 비행기 민항기를 하이재킹을 해갖고 우리나라 춘천인가 어디로 들어온 사건인데 그게 국제법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게 83년도에 있던 일이니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국방부에 있으니까 그 법률 검토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국방부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재 사건이 혹시 범죄행위가 아니냐?” 이래갖고 그 부분도 제가 검찰관으로서 많이 시간을 썼죠. 그래서 어쨌든 후반부에 편한 보직 가지 못하고, 편한 보직을 갔으나 일이 많아서 고생을 했는데, 다 그래도 보상이 있다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국제법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하여튼 “논문을 하나 써내면 학점을 잘 주겠다.” 이래서 이 지금 중국 민항기 사건을 갖고 논문을 써서 냈어요, 학점 대신에. 그런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제롬 코헨이라는 중국 전문가예요, 하버드대학의 중국 전문가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인 중국 그다음에 국제항공법 이걸 갖고 논문을 쓰니까 너무 좋아하셔갖고 그 수많은 학생 앞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서 “저런 한국 학생이 있다.” 칭찬을 너무 해줘갖고 학점은 물론 에이플러스 딱 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덕을 좀 봤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면담자 :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중국 민항기 사건 법률 검토하신다는 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례들이라든가 법률을 보셨을 수밖에 없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습니까?

구술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외무부도 갔었고 그다음에 항공법에 관한 조약들이 있습니다,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런 것도 구해서 그제 일주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다 국방부 장관님한테 보고서를 올려야 되니까 상당히 바빴죠. 그 당시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면담자 :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렇게 기억하시기에는 그때 또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판단도 드실 것 같고요.

구술자 : 네. 그러니까 사실 공부는 타율적으로 하는 공부가 제일 잘되잖아요. 절박할 때 하는 공부가 제일 잘되듯이 그때는 하여튼 절박했으니까 지금도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83년도 일이니까 지금 거의 40년 지났나요? 근데도 그 조문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워낙 절박하게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해갖고.

면담자 : 그런데 당시에 그런 자료들은 많이 제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구술자 :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군대를 다 다녔죠. 대한항공도 가서 구했고. 그때 대한항공에 가서 자료 달라고 그러고 외무부도 가서 달라고 그러고. 그거 전문하는 교수님한테도 쫓아가고. 그걸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했으니까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 신기해요.

면담자 : 상당히 찾아내기 쉽지 않은 자료들이었을 것 같아서.

구술자 : 네, 그렇습니다.

7. 초임 판사시기(00:47:52~00:50:56)

면담자 : 재판관님, 초임 법관 생활을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희망하신 곳이었습니까?

구술자 : 사실 그 시절에는 그냥 성적순으로 서울부터 이렇게 발령을 냈어요. 제가 성적이 아주 좋아서 당연히 서울 간다고,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유는 몰라요. 저뿐이 아니고 몇 명이 그랬어요. 그게 아마 시험이 빠른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저희가 왜, 아까 일찍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도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어쨌든 인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저희집이 그때 연희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래서 큰 불만 없이 다녔는데 저희 그때 부장님들 잘 만나고 동료들 잘 만나고 또 아주 일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는 인천으로 간 거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는 못 해요. 왜 그때 인천으로 갔지? 그러니까 그때 저 말고 몇 명이, 한 세 명 정도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면담자 : 첫 재판부 부장판사님은 어느 분이셨습니까?

구술자 : 유지담 대법관님이신데요. 대법관도 하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초임을 그분을 부장으로 모신 거는 제 판사 생활의 행운이었죠. 그러니까 판사 돼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재판부가 점심, 저녁을 맨날 같이 먹을 정도로 재판부가 이렇게 한 몸으로 움직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판사가 재판 기록을 안 보는 거는 스님이 파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 번 파계 되면 스님 다시 못 된다. 재판 기록을 안 보기 시작하면 절대 다시 못 본다. 그러니까 절대로 초임 판사부터 재판 기록을 열심히 봐야 된다.” 그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까지도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이 보고서 보는 게 좀, 재판 기록 보는 게 좀 힘들어서 대충 볼까 하다가도 초임 때 부장님한테 들은 그 말씀이 있어서 줄 그어가면서 다시 보는 거죠. 아주 제 법관 생활에는 그분의 말씀이 그거 말고도 재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그분이 저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제가 부장님을 참 잘 만났습니다.

<file 2> 목영준 1회차-2.mp4

8.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시기(00:00:00~00:09:30)

면담자 : 재판관님, 처음 배석한 법정과 처음 주심을 맡으셨던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구술자 : 네네. 주심은 처음에 사건(법원)을 가면 전임자한테 물려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주심당 한 150건 정도 물려받는데요. 그중에 한 건이 당시 인천지방법원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명도 기억하는데 인화개발주식회사라는 사건이에요, 인화개발. 지금 참 꿈같은 얘기죠 지금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 인화개발주식회사를 하시는 분이 영종도 레저타운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종도까지 다리를 놓고. 근데 그게 참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이게 완전히 무슨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영종도하고 인천에 다리를 놔서 영종도를 레저타운으로 만들겠다. 참 시대를 너무 앞서간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으시니까 여기저기서 자금을 썼는데 결국은 사업이 무슨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당분간은. 이 분쟁이 생긴 거죠. 재판 기록을 쌓아놓으면 제 키보다 컸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그 사건을 맡으니까 그 사건을 저한테 다 몰았어요. 여러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부터 투자금회수청구에서부터 많은 사건이 있는데 기록이 대개 비슷할 거 아닙니까? 형사 기록 들어와 있고. 저한테 다 그걸 몰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사건 갖고 열심히 했죠, 부장님하고 매일 상의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유지담 부장님 모시고 1년 있었는데요. 민사 합의 사건 1년 만에 끝냈는데 하여튼 그분 지금 어떠신지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너무 시대를 앞서가신 거죠. 지금 영종도가 저렇게 되신 거를 지금 보고 계신 건지.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인데 하여튼 소송이 너무 많이 걸려갔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면담자 : 이해당사자도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겠군요.

구술자 : 네, 거의 수백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하여튼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맨날 밤새고 이래도 끄떡없을 때니까요. 지금 같으면 못 하지요. (웃음)

면담자 : 아, 사건이 상당히 많으셨습니까? 그때 인천법원이.

구술자 : 전체적으로 그때는 한 부가 민사 합의 사건이 보통 350건 정도 할 때니까 주심당 한 150에서 170건 정도 했었죠. 그때는 참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가 무슨 미덕이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판사가 되면 주말이고 저녁때고 으레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애가, 저희 집사람이 출산을 하는데 오늘 출산 아침에 병원에 데려다주고 법원에서 일을 하다가 출산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녁때 가는데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 기록을 갖고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써서 가요. 보자기에 써서 병원에서 애 엄마는 출산해서 누워 있는데 거기서 기록 보니까 간호사님들이 들어와서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웃음) 그때는 저뿐이 아니고 모두 그랬어요, 모두. 그걸 너무 이렇게 당연시하던 시절이죠. 주말이고 주중이고 저녁이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판을 빨리 끝내주느냐,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재판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게 해주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숫자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재판 지연 얘기는 그때도 많이 나왔죠.

면담자 : 한 40년 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신다면 판결문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 분량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40년간 많이 있었는지요?

구술자 : 그러니까 제가 초임 판사 때는 무슨 소위 말하는 컴퓨터라는 게 전혀 없을 때니까요. 다 이 볼펜으로 판결문을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의 양이 아무래도 조금 줄죠, 이걸로 쓰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법원에 와서 판결이유를 줄이지는 운동을 좀 했었는데, 판결문이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면 오해를 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만 판결을 써야 되지 이기신 분이건 지신 분이건 그 판결을 보고 그나마 수공을 하지 팩트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필요한 얘기를 써서 자기하고 다른 팩트, 그게 사실은 소송의 승패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다른 사실이 쓰여져 있으면 판결에 불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은 가능한 한 필요한 것만, 소위 말하는 입증 책임이 있는 요증 사실만 쓰도록 권유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것만 쓰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판결문이 자꾸만 요새 길어집니다. 그래서 긴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면담자 : 85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무 여건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인천하고?

구술자 : 아무래도 판사님들이 그때 서울에 사시고 특히 강남권에 많이 사시니까 당시에 동부지원, 그러니까 인천, 수원을 마치면 동남, 그때는 서부지원이 없었습니다. 동남북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이 강남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동부지원을 많이 지망을 했죠. 저는 사실은 집이 연희동이라 어디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동부지원을 갔고요. 동부지원을 가니까 연희동에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동부지원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잠실이더라고요, 딱 강 다리만 건너면. 그래서 잠실로 이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한 10분 이렇게 걸리니까 근무 여건이 훨씬 좋아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죠.

면담자 : 사건들도 성격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인천하고.

구술자 : 네네. 그때 동부가 서초동 법원이 생기기 전이니까 강남 사건들을 동부지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건이 커지는, 소위 소송물 가액이 높을수록 사건이 커지죠. 그런데 이 강남 같은 게 개발이 되니까 소송물 가액이 아무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소위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선임이 되고 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 물론 중앙만큼, 그 당시에는 중앙지방법원이라고 안 그러고요. 민사지방법원이 있고 형사지방법원이 있었는데 민사지방법원만큼은 아니라도 또 거기에 거의 필적할 만큼 사건들이 좀 어려웠죠, 법률적으로. 인천보다는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면담자 : 사건 건수 자체도 더 많은 편이었습니까?

구술자 : 네, 사건도 많고요.

면담자 : 그러면 일을 하시는 공력은 더 많이 쏟으셔야 되는 상황이셨군요.

구술자 : 네네. 그런데 어차피 그때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일이 많건 적건 큰 감각은 없었어요.

그냥 으레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나가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일하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저뿐이 아니고 그 당시의 판사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그조차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매우 소홀하죠, 가정에.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다 큰 아들딸들한테 비판받는 요소인데 “우리 데리고 한 번 공원을 가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웃음)

9. 대학원 진학과 해외연수 배경(00:09:31~00:16:23)

면담자 :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 공부를 하신 게 눈에 띄었거든요. 아까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은 말씀 주셨습니까마는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공부하셨고요. 켈른대에서도 공부하셨고 또 나중에 2005년에 또 학위를 취득하시기도 하셨고요, 연세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셨던 계기, 각 학교 입학 과정들 이런 걸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술자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학문적으로, 현직에 있으면서도 학문적으로 업적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헌법재판관 하시던 이시윤 재판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성에도 맞고 진짜 열심히도 하시고 그 업적도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저는 사실은 학문적 연구를 그렇게까지 적성에 맞거나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처음에 학문적 연구라는 걸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다닐 때는 실용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사법시험만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아, 그래도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판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뭐라고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나? 그러니까 좀 자극을 받으려면 학회도 가야 되고 또 제가 외국 책도 봐야 되고 또 어학 공부도 하고 이래야 덜 지루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일을 벌리는 거죠. 학회도 가입하고 그다음에 박사과정, 석사과정도 해놓고 논문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놓고 맨날 후회해요. ‘내가 이것을 왜 벌렸지?’ 논문 쓰겠다고 어디 무슨 논문을 하라고 요청을 받으면 “이거 쓸게요.” 그리고 해놓으면 그 6개월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판에 한 달, 두 달 남으면 막 초조하지. 그리고 일은 많지. 그러니까 결국은 밤에, 밤 열한 시에 집에 들어와서 쓰고 해야 하는데 후회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벌려놓고 수습하고, 벌려놓고 수습하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면담자 : (웃음) 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술자 :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면담자 : 하버드 로스쿨을 가시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구술자 : 저희 판사 중에 우리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법조 경력 한 10년 가까이 되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설정해 놓고 그중에 보내는데 판사는 특이하게, 법원은 특이하게 지금도 그런데요. 대학을 지정을 해줍니다. 서로 중복지원을 못 하게 “너는 하버드 가라.”, “너는 콜롬비아 가라.”, “너는 버클리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거는, 남이 지정받은 거는 제가 어플라이(Apply)를 못 하게 만들어 놔어요. 그러니까 다 어플라이, 법원에서 지정해 준 거 이외의 대학은 어플라이를, 예를 들면 백업으로 할 수가 있어도 남이 지정받은 것 지원을 못 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대학을 써내라고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을 써내라고 그래서 항상 하듯이 좋은 대학 순으로 써냈죠, 누구나 그랬듯이. 그랬더니 하버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갖고 하버드를 갔는데 막상 지원을 하고 보니까 다른 대학들은 다 어드미션(Admission)이 편하게 나오는데 하버드는 어드미션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른 대학은 판사가 지망하면 대충 100% 되던데.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대학 한 대여섯 개를 더 백업으로 해놨죠. 해놨는데 다행히 하버드가 돼서 가서 아주 즐겁게 있고, 유학기간이 13개월인데 사실상 하버드의 생활을 한 11개월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간,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버드 유학을 떠날 때 선배들이 아주... 제가 하여튼 항상 저한테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때때마다 있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야, 하버드에서 수업만 듣고 공부만 하려면 뭐 하러 하버드를 가냐? 국내에서 외국 책 사다 보지. 사람을 많이 만나라. 교수도 많이 만나고 거기 온 학생도 많이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공부도 공부지만 정말 악착같이 교수들하고 밥을 먹자 그래갖고 교수들 밥 먹고 거기 어디 가나에서 온 사람,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 브라질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그냥 소위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을 많이 했어요. 공부도 공부지만, 그게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제 안목을 넓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하버드 로스쿨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 가면 교수가 한국 학생을 만나면 “너 아무개 아느냐?” 그럴 정도로 그 교수들하고의, 지금은 젊은 교수가 많이 생겨서 그분들은 잘은 몰라도 하여튼 연세 드신 교수들하고는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죠. 오늘 오전에도 메일을 서로, 안부 메일이 와서 제가 또 메일을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제가 한국동창회장을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지금 교류가 상당히 있죠.

10. 법조인 양성 체제에 대한 견해(00:16:24~00:24:36)

면담자 : 재판관님, 97년부터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셨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당시의 사법연수원제도 법학 학부가 있고 사법연수원제도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두 체제를 비교하신다면 어떤 판단이신지요?

구술자 : 이 얘기는 조금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어느 나라나 나라를 만들 때 법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저희는 소위 법조 엘리트주의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소수의 우수한 사람만 법조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저 사람이 우수하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람 자체를, 구성하는 사람 자체를 매우 탁월한 사람들만 만드는 거죠. 그게 법조 엘리트주의인데 영미법은 출발부터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대륙법에서 출발을 한 건데 지금 대륙법계의 상당한 나라도 그렇게 지금 안 가는데 우리는 하여튼 법조 엘리트주의를 택한 겁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법조인이 1,000명 좀 넘나요? 전국에 3,000만 국민에 1,000명이 좀 넘을 정도의 법조인밖에 없었고 60명씩 1년에 뽑으니깐, 그전에는 더 적게 뽑은 때도 있지만. 그런 법조 엘리트주의를 가다 보니까 법조인이 그 신뢰를 쌓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법조인이 시장 요구는 많고 법조인의 수는 적으니까 법조인이 약간 기득권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면 기존 법조인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선 편안해지고 싶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폐쇄적이 돼요. 구태여 내가 지금 판사 하면서 배운 지식만 갖고도 송무 변호사 해서 잘살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지금 와서 새로운 특허 지식을 배우고 세금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변호사가 적으니까 변호사 만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도 변호사를 못 만나고 다른 직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 부정적 시각도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법조 엘리트주의의 한계가 나타난 게 9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사이에는 그냥 잠복돼 있다.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사법개혁이라는 걸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변호사 숫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변호사 숫자를 늘리자는 요구가 계속 정권 측으로부터 오고 국회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60명에서 80명, 100명, 120명 갔다가 300명으로 갑니다. 그런데 300명 갈 때만 해도 그때도 법조계가 난리가 났어요. “300명 가면 변호사들 다 큰일 난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매니저블(Manageable) 하게 가다가 그 요구도 더 커지는 거죠. 그 요구도 더 커져서 97년도 입학생들이 연수원 28기인데 그때 처음으로 500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500명, 600명, 700명, 1,000명까지 됐어요, 사법시험이. 그래도 이거를 과연 끌고 가는 게 좋으냐? 그러지 말고 지금 민간으로 이걸 넘기자. 그래서 로스쿨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스쿨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결국은 제일 큰 거는, 국가가 관리를 안 하고 대학이 관리를 하는 거고. 물론 변호사 시험은 국가가 관리를 하지만.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로스쿨이 가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소수의 합격자를 위해서 국가에 너무 우수한 인력들이 다 블랙홀처럼 사법시험으로 몰리는 거야. 거기다가 학교 전공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애가 무슨 학교를 어디까지 졸업했느냐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쏠려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보통 8만 명 내지 10만 명이 고시 공부를 하고 1년에 합격하는 것은 500명, 600명이다. 점점 이 숫자는 늘어난다. 그래서 소위 통상 고시 낭인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국가의 우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 한다라는 비판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전공과목들이, 그러니까 무슨 인문학이라든지 공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사법시험 공부로 들어오니까 전공이 피폐화된다는 이런 등등. 그다음에 법조계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폐쇄적이라 전문 지식이라든지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여론에 의해서 로스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연수원 때 얘기를 하면 송무 변호사를 만드는, 소송하는 변호사를 만드는 시스템에서는 사법연수원이 최고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연수생들 들어오면 어쨌든 최고의 판사들, 최고의 검사들, 최고의 변호사들이 가서 그들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생활비라고 할 수 있는 월급도 주고 등록금은 당연히 무료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 여기까지가 문제지 이 2년간의 교육 과정은 굉장히 충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연수원 3년 동안 교수하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느는 게 보여요. 근데 과연 우리 법조인이 소송하는 변호사만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로스쿨 제도로 갔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다 아시겠지만 많죠. 제일 큰 게 우선 공정성 문제. 프라이버트 섹터(Private Sector)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뽑는다는 게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 문제.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학문적 연구를 안 하고 오직 소위 변호사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이게, 그러면 법학은 학문으로서 끝난 거냐? 제가 지금 고대 법대도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거는 수강생이 없어요. 폐장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 큰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개인 생각은 옛날 같은 폐쇄적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 사법연수원제도라기보다는 사법시험제도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길어요.

11. 법원행정처 경험(00:24:37~00:29:52)

면답자 : 잘 알겠습니다. 재판관님, 법원행정처에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묶어서 여쭙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처에서 일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관점에서부터. 그래서 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재판관님의 판단이랄까요? 이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구술자 : 그러니까 우선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의 지원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그렇듯이 지원이라는 거에, 행정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게 우선 인사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 홍보, 대외협력 이런 게 들어가요. 시설관리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권한이 되는 거죠, 권한이.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좀 생겨요.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뿐이 아니고 지금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법행정은 재판하고는 완전히 틀린 일이거든요. 이걸 상명하복 관계가 안 되면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우선 나지가 않습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관의 신분으로 행정처에 들어가서 사법행정 업무를 하게 되면 법관이라는 거에 본래의 개념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 입장에서 대법원장이 되어서 법원행정처를 꾸려야 되는데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재판만 하던 사람을 행정을 시키면 여기서 미스가 나니까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해본 사람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처럼 이 단계에서는 이 자리, 그 윗 단계에서는 이 자리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인사가 되니까 밖에서 보면 회전문 인사가 되는 거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되는 건데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돌아가니까.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됐다. 그래서 저 있을 때부터도 “법원행정처를 슬림화하자.” 라는 얘기는 계속 수십 년간 나왔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건 뭐냐? 법관 인사를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예산, 기획 이런 거는 일반 법관 아닌 사람이 법원을 모르고, 재판을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아주 필수적인 요소만 놔두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참 그게 어려운 건데 공보 공보를 왜 판사가 하느냐? 이래서 공보관을 민간인으로 바꿨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한때 공보관을 언론인 출신도 해보신 적이 있고 이런데요. 이론은 그런데 기자들이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얘기는 다 재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나 아니면 연구관들이 대답을 해야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공보관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행정처가 자꾸만 사람이 많아져요. 많아져서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좀 줄이는데 지금 대법원장님의 경우에는 많이 줄였다고 그래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법원에 사법행정을 하는 기관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고 일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본이 사무총국이라고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한국, 일본이 법원행정처가 아주 좀 센 그런 편인데 하여튼 확대를 하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소위 말하는 행정처의 권한이 확대되면 재판하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가 있고 반대로 행정처의 권한을 줄이고 법관을 많이 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 헌법재판관 지명제도(00:29:53~00:39:31)

면담자 : 헌법재판관 시절의 말씀을 여쭙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 8월에 국회 추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명이 되셨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현재로 가시는 것을 만류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구술자 : 만류하셨겠죠. 만류하시는데 제가 아까 행정처 얘기를 좀 하면 조금 독특하게 행정처를 젊을 때 당연히 있었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비서실장에서 보통 재판 복귀했다가 다시 행정처로 오는 회전문을 하는데 저는 회전문도 못 하고 거기서 바로 기획조정실장을 갔어요. 거기서 3년 가까이 하다가 대법원장님이 바뀌셨어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새로 오셨는데 저는 당연히 행정처에 오래 있었으니까 재판부 복귀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법원행정처장을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대법관 중의 한 분이 법원행정처장을 하셨는데 이 대법원장님 생각은 그건 행정인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무직 법원행정처장님으로 다른 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낫겠다, 이래서 차장은 행정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를, 제가 법원행정처장 할 기수가 안 되는데 하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서부터 차장까지 거의 4년 가까운 기간을 하다 보니까 당시의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 국회의원분들하고 업무상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이 친숙해지고 그런데 차장을 했는데 양당 합의는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양당이 합의한다는 게. 그분들끼리 아마 “그래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생각했는지 저한테 말씀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이유는 있었지만, 헌법재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었고요. 법원에서 행정을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승낙을 했죠. 정말 영광스럽게 양당 합의 헌법재판관이 되게 된 거죠.

면담자 : 과정이 그렇게 됐었던 거군요. 자주 이것도 얘기가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발 폭을 좀 넓혀야 된다. 법관 위주에서 넓혀야 된다. 이런 견해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쪽에서 더 이런 견해가 강한 것 같은데요. 재판관님께서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술자 : 저는 예전부터 재판관의 3분의 1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들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옛날부터 주장해 오던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이라는 게 법리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꼭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일본같이 헌법재판을 안 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지금 외교관 출신이라든지 교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그분들로 말하면 최고재판소 판사를 하시거든요. 저희도 한 3분의 1까지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 법률가가 아닌 분도 들어오셔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옛날부터 생각입니다.

면담자 : 지금 현행 헌재 재판관은 행정부와 국회, 대법원이 이렇게 지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술자 : 저는 옛날부터 반대였죠. 옛날부터 저 될 때부터도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제일 큰 권한은 법률을 폐지하는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법률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과반수의, 아닌 법률도 있지만, 최소한 과반수의 의결로 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거를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반을 넘는 방법은 3분의 2죠. 그래서 저는 모든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의결로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법원에 있을 때부터 외치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야 헌법재판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거죠. 실제로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물론 하지만 거기서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있어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더 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한 번 시키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이 혼자 자기 소신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6년 단임제니까 단임은 아니지만 실제로 6년 단임제처럼 운영을 하니까 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 곤란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면담자 : 역시 약간 연동이 되는 얘기인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상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현재 소장님이 결정이 되는데 재판관들의 호선을 통해서 선출해야 된다는 등등. 그러니까 어떤 독립성 또 위상 강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헌법재판소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구술자 :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호선 반대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봤는데 이 호선이라는 게 그냥 제일 편하게 위원들끼리 결정하는 건 시니어리티(Seniority)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자기한테도 오니까. 예를 들면 호선을 하게 되면 대개 나이 많은 분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퇴임하면, 정년 퇴임이든 뭐든 하면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의견이 갈리면 호선이 안 되고 또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호선으로 안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호선제도를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해보면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랬는데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차이지 국가의 어떤,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진짜 그야말로 n분의 1입니다. 9분의 1이라서 저희가 경험해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소장도 소위 삼부 요인으로서 예우라든지 이런 거를 위한다면, 그래서 소장이 좀 중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국회, 예를 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재판관을 뽑는다면 소장은 5분의 4 이상을 뽑는다는지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정당성을 더 부여하면 되지, 그러면 대통령이 5분의 4의 동의를 얻을 사람을 쉽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선제보다는 좀 더 정당성이 높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면담자 : 재판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현재 소장이나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구술자 :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민주주의의 과정이죠. 그러면서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회가 움직이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를 우려해서 자꾸만 제도를 편안하게 만들면 거기서 잘못된 인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3.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입장(00:39:32~00:48:36)

면담자 : 재판관님, 재임기에 주요 사건과 관련된 말씀 여쭙겠습니다. 2008년 1월인데요.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이명박 대통령 특검과 관련해서. 나머지 조항에서는 합헌 결정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때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재판관님의 판단이랄까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랄까요? 이런 게 좀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 우선은 절차적인 것과 실체적인 걸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절차적인 거는 우선 두 달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 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두 달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 분의 수사를 한다는 특검법인데 얼마나 세상의 관심이 많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특검이 수사를 하든 소추를 하든 결정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굉장히 급하죠, 사건의 처리가. 그래서 재판관들끼리 논의를 해서 “하여튼 이거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자.” 그렇게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주심이니까 하여튼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연구관들하고 정말 밤새고 했죠. 밤새고 해서 13일에 끝났으니까 빨리 끝난 거죠. 아마 전대미문이었으니까 후대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고 13일에 끝난 건 탄핵 사건도 두 달이 걸리는데 빨리 끝난 거죠.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 쟁점은 여러 개 있지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게 처분적 법률이다. 처분적 법률은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서 처분을 하는 법률이니까 평등권 침해다 이게 쟁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동행명령이라는 게 결국은 특검이 불러서 안 오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니까 이것이 영장주의에 반하느냐 쟁점이 두 개였는데요. 첫 번째 처분적 법률은 결정문에 다 나오지만, 그거는 국회 입법 재량이라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해서 기각을 했고요. 동행명령은 소위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지만,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하는 분들 해서 위헌이 됐죠.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봐요. 물론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의견을 냈지, 뭐. 그런데 물론 다 반대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합의 과정이 워낙 바쁜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재판관들끼리 정말 열심히 다 논의를 하시고 서로 자기주장 다 하시고요. 하셔서 아직 동행명령이 지금 남아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헌 심판 제청이 안 가서 판단이 안 되지 이 특검법 말고 동행명령이 남아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건 만약에 위헌 심판 제청이 되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죠.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면답자 :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알고 싶은 건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문제거든요. 이게 사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뒤에 미디어법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결정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법원에서 결정이 되는 이런 일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법관으로서 판단하시는지요?

구술자 :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죠.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수백 년의 세계 역사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의회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거고 의원님들을 저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을 해서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라.” 라고 한 건데 그걸 자꾸만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 하고 사법부로 끌고 오는 거는 바람직한 민주주의제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운영에 있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사법부 입장에서는 어떠냐? 저는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면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용을 존중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 물론 중간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하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면 다수결의원칙을 위반해서 무슨 사사오입개헌을 했다, 이걸 위헌이겠죠. 위헌이지만 거기에 무슨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기회가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거는 일단 맡겨놓자. 그래야 의회도 자정적인 힘이 생기지 이걸 자꾸만 미주알고주알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법률이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상당히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노동법 사건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 미디어법 사건도 그랬고 여기 사학법 사건도 그랬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학법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거고 미디어법은 당시 열린우리당이요.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건데 어느 쪽도 마찬가지로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치의 사법화뿐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그 국가의 법적 안정성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존중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봐야 큰 소용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정치의 사법화가 안 되지 와서 소기의 목적을 자꾸만 달성을 하면 계속 오죠. 그거는 민주주의에 맞는 그림은 아니죠.

면답자 : 그러다 보면 현재라든가 법원의 재판관들, 판사분들이 당파적인 어떤 입장에서 정치 현장으로 자꾸 끌려들어가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것은 또 법원이라든가 현재의 독립성에도 영향이 좀,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술자 : 그래서 제가 지금 형태의 재판관 선발 형식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을 지명하는데 그중에 한 당씩 나누고 양당 합의는 하나면 극단적인 얘기로 중립적인 위치는 양당 합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재판소 구성에서 적절하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독일이 기민당 정권 시절에 현재소장이 사민당 당원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얘기죠. 물론 공직으로 가시니까 교수 때는 당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갖고 가시다가 소장 되시고는 당적을 물론 버리셨지만, 그런 구도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전제가 돼요. 과반 동의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 진보건 보수건 간에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받지 않았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4. 재외국민의 선거권 헌법소원사건(00:48:37~00:53:32)

면답자 : 2007년 6월에 재외국민 선거권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당시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습니다. 두 분이 별개의 의견을 내셨는데 “당시에 재판관님께서서는 주도적으로 헌법불합치를 이끌어내셨다.” 이런 후문이거든요. 그때 당시 입장을 논거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구술자 : 그때 사실 정서적으로 보면 이게 선거권과 국방의무, 납세의무 이렇게 패키지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교민, 소위 말하는 해외 재외국민은 병역의무나 이런 게 없으신, 납세의무는 당연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투표권을 안 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베니스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1년에 두 번씩 가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마침 이게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재외국민 선거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병역의무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밖에서 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겠다고 그걸 왜 마다하냐?” 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어느 나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주자는 나라가.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선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이런 논의도 거의 다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바이블처럼 내려오던 비밀투표 이 부분은 의외로 외국에서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비밀, 보통 이런 거 4대 원칙 있잖아요. 그중에 비밀을 굉장히 해서 예를 들면 군대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야, 너 여기 찍어.” 이럴까 봐 비밀투표를 하는 건데 제가 외국에, 국제무대에서 느낀 거는 비밀투표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믿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배에서 선장이 뭐라고 그러다고 안 찍냐? 나는 괜찮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에 와서 평의를 하면서 “우리도 주자.” 그런데 약간 별개 의견은 있었어요. “영주권자는 주지 말자.

영주권자는 진짜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인데 왜 주냐?” 이런 별개 의견도 있지만, 재판관님들이 다 같은 의견이셔서 됐는데 저희가 위헌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위헌을 해놓으니까 2009년도 개정 법률에서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요건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외국민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냈죠. 저희가 한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임 우리 재판관님들이 국민투표는 전국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거소 신고를 요구하는 건 위헌이고 지방자치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이 있으니까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투표하겠다는 의사는 있어야 되니까 거소 신고받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자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정권 확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구술자 :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 마음도 약간 흔들리는데 글로벌스탠다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국민이, 국적을 가진 국민이 내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건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정권의 범위를 넓힌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file 3> 목영준 1회차-3.mp4

15. 간통죄 위헌 제청 사건(00:00:00~00:05:00)

면담자 : 재판관님, 2008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게 이른바 유명 탤런트와 관련된 간통 헌법불합치와, 아니, 간통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여전히 간통죄 유지 여론이 높았던 당시 상황에서 좀 소수의견을 내셨었던 것인데요. 그 과정 좀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 이 간통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 저희 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법적 심판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소위 우리 사회공동체가 갖는, 공유하는 선, 가치, 사회질서 이런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개개인이 갖는 인권,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런 게 중요한 거냐가 항상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걸 선호하느냐는 그분의 법철학적인 가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틀리다도 절대 아니고 그건 비난할 일도 절대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자유라는 게 뭐냐? 이게 자기 의사결정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거. 담배를 피우면 몸에 나빠요. 그러면 국가가 담배 피우는 사람은 형사처벌한다. 이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내가 몸에 나쁜 건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독재국가보다 좋은 것은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자기 의사결정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물론 100%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간통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인데 우리의 공공의 도덕,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공공의 도덕은 부부간의 신뢰가 결혼을 할 때는 부부간에 서로 소위 순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순수성을 깨고 배신을 했다. 이 부부간의 도덕이라는 공공의 선 그다음에 소위 성적 자기 의사결정권이 충돌을 하는 거죠. 저도 당연히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국가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써서 개입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결정문에도, 반대의견 결정문에도 썼지만 그러면 불효, 형사처벌할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게 도덕과 법의 경계선을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간통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국가가 형사적으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 또 실제로 지금 간통으로 처벌받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간통죄가 전 세계적으로

문명의 발달 전 단계에서 시작이 됐나 하면 남성은 굉장히 강하고 여성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통죄의 주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남성이 간통을 하면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간통으로 기소하는 사건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형해화됐고 그래서 우리가 법률과 현실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간통죄는 폐지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의견들이 갈렸죠. 갈려서 저희가 소수의견이 됐고 합헌 의견은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저희 다음 재판부에서 위헌을 내주셔서, 제가 간통죄가 위헌이 된다고 즐거울 일은 없는데 제 생각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면답자 : 그러면 재판관님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이것이 우리 헌법 가치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구술자 :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 양벌규정에 대한 견해(00:05:01~00:09:06)

면답자 : 2009년 7월 사건인데요. 종업원 등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인 법인 및 개인이 아무런 책임 없이 동등한 형으로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대해서 위헌 7인, 합헌 2인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내적으로 법리적인 법 가치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이 왜 합헌으로 유지됐었는지 또 이것이 또 위헌으로 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 사실은 양벌규정... 제가 예전에 판사 하면서 형사재판을 생각 밖으로 못했어요. 처음에 판사 경력 그저 한 몇 년 됐을 때 형사재판을 해보고 그다음에는 형사재판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에 좀 많이 근무하고 사법연수원에 근무하고 재판할 때는 민사재판하고 이래갖고 형사재판을 못 했는데 처음에 형사재판할 때 정말 수두룩하죠, 뭐. 이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이. 그런데 제 머리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규정이 존재를 하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원칙이 자기 책임주의 아닙니까? 책임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 그런데 그게 무시되는 조문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위헌 심판 제청 이런 걸 생각을 못 했고 그러다가 잊어 먹었죠, 형사재판을 안 하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이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빨리 위헌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위헌결정이 나니까 그 뒤에 법률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소위 말하는 법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조문인데 거기다가 단서를 하나씩 다 달았습니다. 불합치가 나니까, 위헌이 나니까. 뭐라고 달았냐면 “처벌한다. 단, 사용자가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소위 면탈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된 뒤에도 옛날 사건에 대해서 계속 위헌 심판이 양벌규정이 한 번 났으니까 재심 들어오고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위헌 심판 제청이 됐어요. 당연히 저는 단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수의견은, 형법 1조 2항에 보면 “형이 경하여지면 경한 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형법 1조 1항에 의해서 구벌이 아닌 개정 신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럼 구벌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는데 결국은 그게 다수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재판에 구벌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양벌규정을 위헌을 만들어서 모든 법률이 개정이 되게 한 거는 잘 한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좀 아쉽죠

면담자 :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은 상태로 그 상황을 보고 계시겠네요.

구술자 : 네.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금은. (웃음)

17. 사형제에 대한 입장(00:09:07~00:13:34)

면담자 : 사형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2010년 2월 사건인데 당시 재판관들께서 생명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인 기본권이다라는 논거를 통해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관님의 생각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 사실은 이 사형제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주 흉악범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사형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꼭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약간 억울한 사형수라든지 이런 영화가 나오고 이러면 사형 폐지를 해야 되고, 저희 나라도 똑같죠. 똑같은데 저도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흉악범들을 사형을 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1번,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법률로 본질적인 권리는 제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명만큼 본질적인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 중에 생명이 100이면 100이다. 그거를 어떻게 지금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생명권을. 그게 법리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오관의 위험성 또는 저희 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이 선고돼서 집행이 됐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가 실제로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고 지금 몇 년 됐죠? 25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 몇 분이 지금 남아 계신데, 그래서 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저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하지 못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그럼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나? 국가가 이걸 떼뺏히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더 효율적인 다른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물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른바 ‘감형 없는 종신형’ 이라는 게 물론 독일에서는 그것도 위헌이 났어요. 독일에서는 그것도 위헌이 났지만, 일단 한 번 단계적으로 가보자. 그렇지 않으면 형기의 제한을 50년이라든지 40년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가보자. 그 형의 제한을 풀어버리자. 이런 대안을 차라리 만드는 게 국가 운영에 맞는 거지, 하지도 못하는 사형 판결을 해 갖고 집행을 못 하는 나라가 그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제가 위헌 의견을 낸 거고요. 저도 흉악범 보면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사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비인권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과도한 해석 같고 필요에 따라서 사형제도를 갖는 건 좋은데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18.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00:13:35~00:17:04)

면담자 : 2010년 11월에 있었던 것인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관님께서서는 이공현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내셨거든요. 또 2011년 6월 30일 결정에서도 단독으로 같은 취지의 또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구술자 : 이공헌재판관이 없었으니까. 이공헌 재판관이 퇴임을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혼자 했죠.

면담자 : 네, 그렇습니다. 이때 반대의견을 내셨던 배경이랄까요? 그걸 좀 말씀해주시죠.

구술자 : 그러니까 저도 여성도 소위 총 들고 군대 가라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보면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국민은 남성, 여성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배분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면 여성한테는 국방의 의무를 뭐를 부여한다는, 국가의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다음에 헌법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병역의무라는 것은 수십 가지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든 병역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병역도 포함하는 국방의 의무를 배분을 해라. 그다음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으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라. 그게 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권 문제로 가는 건데요. 평등권은 결국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 합리적인 차별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기준 하에서 남성은 총 메는데 군대 가고 여성은 다른 종류의 국방의 의무를 하고 또 만약에 남성이 불이익한 처우를,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거죠. 받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여튼 보상해라, 꼭 무슨 가점제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자,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고 정부가 지금 주장을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거니까 불이익한 처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보상 못 해 줘.” 라고 선언을 해놓고 운동선수가 국가에, 무슨 메달 따서 국가에 기여했다고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해 줘요. 그러니까 국가 스스로가 신성한 의무라고 그랬다가 국가에 공헌한 사람을 면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 스스로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라는 취지이지 무슨 여성도 총 들고 군대 가라 그런 취지는 아니예요.

면담자 : 평등권 차원에서.

구술자 : 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죠.

19.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00:17:05~00:21:08)

면담자 : 또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2007년 사건인데요.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셨고요.

구술자 : 네, 그렇습니다.

면담자 :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 판결에 대한 재판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 이 판결의 중요성은 외국인, 꼭 근로자가 아니라도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해서 첫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저희도 논의를 했어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외국인 산업 연수생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예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른바 권리성질설이라는데 입각을 해서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이고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뒤에 2007년 1083호 결정에서도 여기서는 직장 선택의 자유.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직장으로 옮길 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적 성격이 있으니까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라도 제가 평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재판관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96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차별도 아니고 무슨 퇴직금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좋겠냐? 지금 우리가 그런 반대의 입장 아니냐. 우리도 좀 과감하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동등한 대우를 해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건 다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게 위헌결정이 났는데 상당히 뜻밖의 결정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후에 우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이 외국 순방을 가서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나라가 아마 저희 나라에 많이 산업 연수생을 파견한 나라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았다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우리 이강국 소장님은 사실은 각하 의견 내셨거든요. (웃음)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면답자 : 그렇다면 헌법 가치, 헌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을 초월해서 적용해야 된다.

구술자 :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청구권적 기본권도 있는데 적어도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것이다. 제가 맨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많이 외치는데 결국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위해서는 외국인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00:21:09~00:28:11)

면답자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에서 2010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이 이게 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셨고요. 일단 이 불합치결정 자체가 이른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구체적인 제도에 지금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신 것 같은데 이 결정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2005년에 합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뀌는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 바꿀 경우에 현재의 입장이랄까요? 어떤 변화가 이런 결정이 바뀌는 상황을 만드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구술자 : 우선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행정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우리 법률 조항에 보면 “기소가 되면 뭐가 된다.” 이런 게 꽤 많아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기소는 하나의 행정 권력의 공권력 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신분적 제한이 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그래서 그것도 종종 소수의견을 냈었고 그것도 제가 소수의견이었죠. 그다음에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왜 우리가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느냐? 그만큼 지금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도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될 권력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1심이건 2심이건 확정되기 전에 그 권한을 박탈한다? 이것은 저는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결론은 당연히 그랬는데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헌법불합치, 이것도 다섯 명이 위헌이고 한 분이 불합치고 그래갖고 겨우 불합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제일 큰, 저도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나라가 이런 헌법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임기를 길게 하느냐? 미국은 종신제, 어떤 나라는 정년 70 몇 세 정년, 어떤 나라는 12년. 독일은 12년이죠. 최소한 9년이에요. 6년 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헌법재판의 결론은 재판관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재판관이 자주 바뀔수록 의사 합치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재판관 임기를 길게 만들어야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저희 나라처럼 6년마다 바뀌면 계속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재판관들의 임기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9년 아니면 12년, 이렇게. 종신제는 몰라도 재판관 임기를 늘려서 조금 법적 안정성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면담자 : 이른바 4기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중도적 성향이 강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논문에서 제가 본 평가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관님께서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구술자 : 4기 재판. 제가 남의 재판부를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4기 재판부, 저희들 재판부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분부터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분이 몰리지 않고 걱정하게 분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원합의보다는 막 스플리트(Split)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건 4 대 1 대 4도 되고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쏠리지를 않고 걱정하게 유지가 됐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분들이 중도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중도라는 표현보다는 분포, 아홉 명을 모아놓으면 중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홉 분이 정말 틀려요, 생각들이.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판부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결정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관 아홉 명이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까지 온 일이, 그런 정도의 컨플릭트(Conflict) 한 일이 아홉 명의 전원이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게 맞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스플릿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활자화되고 소수의 사람, 자기가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용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 나를 지지하는 재판관의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홉 명 전원일치가 좋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희 4기 재판부가 굉장히 바람직했다. 결론이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났지만 저희가 의견을 모아보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서부터 이쪽까지. 그래갖고 치열하게 서로 공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다, 다른 기수를 제가 비교 평가할 수는 없고 저의 기수는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문제(00:28:12~00:31:35)

면담자 : 재판부 구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재판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 재판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명 주체들에 어떤 당파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실제로 법관들이나 법조인들도 일정한 당파성을 가지는 게 미래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지형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관님?

구술자 :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는 지금 국민한테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한테 선출된 권력이 다른 사람을 임명할 또는 권한을 위임할 정당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재판관이든 법관이든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임명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다고 법관이나 재판관을 투표로 뽑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된 사람이 내가 어느 정치권력에 의해서 재판관이 됐다, 법관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의 소신, 자기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얼 워런 대법원장, 지금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분은 공화당에서 임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일 후회했다고 보통 들리는 얘기인데 그 얼 워런 대법원장님처럼 진보적인, 미국을 진보로 끌고 간, 제가 말한 진보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진보·보수는 아니고요. 하여튼 진보적인 결로 끌고 가서갔고 지금의 얼 워런 코트 그 뒤에 있던 코트까지 다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소신이 있는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권력으로부터 임명이 벗어날 방법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임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임기가 길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의회 권력의 다수가 3분의 2, 절대다수가 아니라 소위 건설적 다수인 3분의 2가 하고 5분의 4가 할수록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우리를 임명을 하는데 의회 권력의 3분의 2, 5분의 4가 해준다든지 아니면 임기를 길게 해준다든지 하면 독립해서 재판할 가능성이, 자기 임명권자로부터 독립해서 재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 법의 지배성(00:31:36~00:35:36)

면담자 : 잘 알겠습니다. “법률가는 정확한 법률 지식은 물론 법조 엘리트로서의 희생, 판단의 사회적 타당성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재판관님께서 2008년 경북대 법대생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가의 역할’ 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연이었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편가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철학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재판관님의 법철학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 많은 법률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법률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이게 법의 지배 또는 법의 우위 실현이 안 되면 국가가 안정이 될 수도 없고 발전이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약속 안 했죠. 하지만 인구 5,000만의 우리나라에서 약속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손으로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의 약속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하면 이 사회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를 해야 되는데 법의 지배를 하려면 법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법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에는 법률가한테 주어진 책무죠. 그러니까 법률가가 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법률가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을 때 법의 지배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보편적 지배라는 게 누가 “법이 전부야?” 이게 아니라 법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의 의미를 법률가들이 사회 곳곳에 전파를 해서 예를 들면 회사에 가 있는 사람이 무슨 뭐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장한테 “이거는 법이 이렇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함으로써 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로 장관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법률가가, 제가 아까 법률가가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적으면 사회 곳곳에 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청년 변호사들이 힘들더라도,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법조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소수의 법조인이 됐고 이분들이 기득권층화가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니까 국민의 비판은 그러면 법조인을 늘려라, 그래서 갑자기 늘리니까 법조인이 가야 될 자리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죠. 또 수요 공급도 안 맞지만, 신규 법조인이 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옛날 10년 전, 20년 전의 법조인의 위상과 지금 자기네가 부딪히는 법조인의 위상이 너무 틀리니까 여기서 갈등과 좌절을 느끼는 거죠. 이 청년 변호사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선배 법조인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빠져 나가줘야, 법의 보편적 지배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변호사님들한테 매우 죄송한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극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는 거죠.

23. 낙태죄 사건(00:35:37~00:40:52)

면담자 : 네, 잘 들었습니다. 2012년에 결정이 난 사건인데요. 조산사가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서 낸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이게 낙태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때 반대의견을 내셨는데요. 이걸 제가 여쭙는 것이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제가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재판관님께서 스스로 “나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법률가로서의 진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사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연결해서 말씀해주시죠.

구술자 :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칭하는 보수와 진보는 법철학적 기준의 진보·보수와는 명백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법철학적 진보·보수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선 또 그러기 위한 우리 사회질서 이런 하나의 헌법적 가치가 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존엄과 가치라는 또 하나의 헌법적 가치가 계속 충돌하거든요. 그중에 “무슨 소리아? 그래도 우리 사회에 공공의 선이 우선이 돼야 돼.” 이런 견해가 소위 보수고 “무슨 소리아? 개인 중요하지.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게 진보거든요. 미국 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서의 보수·진보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개인이 중요하니까 무슨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다 허용이 되는 거고 보수 쪽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뜻에 맞지도 안 되는 얘기도 이래갖고 공동의 선의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를 인정 못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진보·보수의 가치가 충돌하거든요. 저희 나라가 말하는 보수·진보하고는 전혀 틀린데요. 이 낙태죄라는 게 미국에서도 진보·보수가 제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하나의 소위 개인의 자기 의사결정권이라는 가치와 소위 말하는 태아의 생명이라는 정말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미국도 정말 치열하게, 그러니까 미국도 주마다 보수적인 주가 있고 진보적인 주가 있는데, 보수적인 주는 낙태금지법을 막 만들어 대는 거고. 그러면 그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연방 헌법재판소에다 또 소위 위헌 심판 제청, 우리로 말하면 위헌 심판 제청을 하는 거죠. 그게 1973년도에 그 유명한 웨이드 대 로(Wade v. Roe)라는 사건으로 소위 삼분설.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해 주는 거죠.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위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자기 의사결정권에서 헌법상 권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금년, 금년 6월 24일이예요. 6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다 보수화시켜서 거기서 소위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이라는 사건에서 헌법상 권리 아니다. 그래갖고 73년도의 그 웨이드 대 로를 폐기하거든요. 변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리예요. 지금도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보적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저라고 무슨 국가 공동의, 국가 사회 공동의 선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두 개가 충돌될 때 가능하면 이쪽을 선택을 하는 주의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임신부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벌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다 낙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23, 24주가 되면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다, 태아가. 그럼 그때는 정말 못 하게 하자. 그러나 24주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를

들면 강간을 당했다든지 도저히 애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든지 이런 건 임신부한테 자기 의사결정을 하게 해주자. 그래서 그게 3분설에 저도 입각을 해서 반대의견을 썼고요 우리 다른 재판관님 세 분도 저와 같은 의견이셨고 금년 6기인가요? 6기에서 다행히 낙태를 위헌을 내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24. 헌법재판소와 한국사회(00:40:53~00:49:37)

면담자 : 잘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와의 관계 속에서 위상을 지켜야 되는 어떤 숙명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재임하셨던 당시에 입법부와 관계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재판관님께서서는 마음속에 기준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구술자 : 간단합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입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다만, 어떠한 입법도 국민의 기본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은 과감하게 위헌을 한다. 이게 제 생각이기도 했고 우리 전체 재판관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시다. 다만 위헌하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었죠. 저는 확고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위헌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실제로 국회라는 입법부라는 데가 어차피 입법부의 선출 과정이라는 것이 국민의 투표,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정의로운 소수?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한 배려는 해줄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입법부의 의견과 달리 한 거죠. 그런데 관계 나쁘지 않았습시다, 저희는.

면담자 : 특히 법원과 헌재와의 관계 언뜻 보면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상호 견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재판관님께서서는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라든가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술자 :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제 견해에 대해서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분도 많은데요. 저는 심플합니다. 최고, 최종 의사결정 기관, 해석 기관은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병존 양립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법적 안정성도 해치고 국민들도 법 해석이 달라지면 혼동이 오고요. 그러니까 최종, 최고의 사법기관은 하나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1988년에 생겨서 지금 무려 35년이 지났는데 지금 헌법재판이 최고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할 방법은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우리 사법의 최고점에 있는 거는 틀림없는데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을 미국은 사법부라는 조직의 정점에 뒀고 독일은 사법부의 옆에 뒀죠, 병렬적으로²⁾ 그러나 이게 병렬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3심까지 한 재판을 헌법소원에 의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점에는 다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죠. 별개의 조직에 두느냐, 그 상층부에 두느냐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최고의, 최고, 최종의 법률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이다. 그런 과정은 헌법재판이다. 이거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누가 하느냐? 대법원의 위로, 하여튼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 하느냐, 아니면 독일처럼 별개 기관이 하느냐라는 거고요. 이게 헌법개정 문제니까 헌법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68조 1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법률이니까. 다만, 헌법소원, 재판 소원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조문에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 독일 기본법은 '사법'의 장에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으로서 연방법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걸 하지 말고 조문에 예를 들면 “명백히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 이렇게 조문에 써주면 재판 소원이 된다. 이러면 헌법재판소도 그것을 무한히 확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을 해서 최고 헌법 재판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미국식으로 만들든 독일식으로 만들 때는 헌법적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면담자 : 잘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헌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좀 피상적이지만 재판관님께서 보시기에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구술자 : 제가 한 십수년 동안 여기저기서 헌법재판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헌법재판 결정 리스트를 꼭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제가 막상 헌법재판을 할 때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이 중요하냐? 입법부는 국민, 소위 말하는 대중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입법 못 합니다. 그러니까 꼭 과반이 아니라도 어느 강력한 반대 집단이 있으면 국회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동성동본 혼인 금지 법률이 있는데 국회가 개정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해서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그 수많은 법률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폐기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잘 운용하느냐? 못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가장 중요한 게 합목적성이고 효율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국민의 기본권 보호 그런 거는 우선 생각을 해도 그럴 여유가 없죠. 사법부는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또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판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결국은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헌법재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최고, 최종의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더 위헌을 했어야 돼. 더 위헌을 했어야 돼요. 저희 기쁨이 아니고 더 위헌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지금 34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한 일은 정말 엄청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25. 종합평가(00:49:38~00:56:33)

면담자 : 그렇습니다. 재판관님, 긴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셨던 경험이 이후 법조 활동이나 공적인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구술자 :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을 했다고 그러면요, 남들이 우선 믿어줍니다, 뭘 해도. 대법관보다 더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헌법재판관을 했다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공정할 것이다. 저 사람은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믿어줍니다. 그게 우선 제일 좋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제가 법관을 하면서 느꼈던 것과 헌법재판관을 하면서 느꼈던 어떻게 보면 권리의식, 인간의 존엄 이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6년 동안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우연히 지금 여기 사회 공헌하고 이제 같이 포개지니까 사회 공헌하는 데 헌법재판소에서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의 추진 동력 이런 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제가 안 했으면 굉장히 폭 좁은 사람이 됐겠다. 폐쇄적인 사람이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제가 했던 것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 4기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거나 아니면 알려졌어야 되는데 덜 알려진 내용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구술자 : 다른 저희 4기 재판관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저희 재판부는 우선 굉장히 개성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법철학적 이념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또 넓으면서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적당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결정문을 보면 막 조각 결정문도 있습니다. 3 대 2 대 4 대 이런 결정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좀 정리를 안 하고 갔나?” 이러지만 저는 그게 헌법재판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관님들한테 제가 고마운 게 정말 개성들이 강해요. 그래서 평의를 할 때 지금 재판부나 저희들 전 재판부는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그런데 물론 그러고 딱 끝나면 항상 저녁을 같이 먹거든요. 거기서 깔깔 대면서 웃으면서 끝나서 지금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지냅니다. 근데 저희 재판부에 대해서 혹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뉘었느냐? 의견들이 막 그렇게 산만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산만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만큼 아주 분포가 잘돼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제 스스로는 4기 헌법재판부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담자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 제언 등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술자 : 저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재판소가 스스로 하는 인식보다는 훨씬 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은 제 경험, 재판관님들마다 틀릴 수 있지만 제 경험상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이 사회적 갈등보다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현실보다는 당위성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보통 독일어로 “자인(Sein)보다는 줄렌(Sollen)을 가라.” 라고 그러는데 그 방향성을 갖고 자신 있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론의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추면 여론이 없지만 현실보다 미래를 맞추면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을, 가만히 놔두면 욕을 안 먹어도 갈등을 자꾸만 봉합하려고, 화합하려고 하면 욕을 먹어요.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면 욕을, 비판을 안 받고 편하지만 당위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비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조직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식을 하고 좀 자신 있게 갔으면 좋겠다. 비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지금 재판관은 물론이고 연구관들 또 우리 재판소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재판소가 얼마나 대단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당부 말씀이죠.

면담자 :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목영준 재판관님을 모시고 진행한 구술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 :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